

<http://kostat.go.kr>

기업통계등록부 이용자 안내서

User Guide for Statistical Business Registers

2023.



통계청
Statistics Korea

기업정보가 필요하다면?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를 활용하세요!



목 차

CONTENTS

기업통계등록부 (SBR) 소개

- 1 기업통계등록부란? 4
- 2 작성연혁 5
- 3 포괄범위 6
- 4 통계 단위별 제공항목 6
- 5 작성단위 7

SBR 항목 이해하기

- 1 명부 12
- 2 기본항목 13
- 3 특성항목 17
- 4 기타항목 20
- 5 기후변화 관련 항목 21

SBR 이용하기

- 1 이용 절차 24
- 2 이용 형태 및 제공항목 25
- 3 이용시 참고사항 26
- 4 활용 사례 28

부록

- 1 기업통계등록부 레이아웃 30
- 2 기업통계등록부 구축시 활용자료 35
- 3 기업통계등록부 관련 규정 36
- 4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 42
- 5 행정구역분류코드 44
- 6 주요 용어해설 45



기업통계등록부 이용자 안내서

User Guide for Statistical Business Registers



기업통계등록부 (SBR) 소개

(SBR, Statistical Business Registers)

기업통계등록부(SBR) 소개

(SBR, Statistical Business Registers)

1 기업통계등록부란?

기업통계등록부는 다양한 기관의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연계하여 구축한 기업 및 사업체 단위의 모집단 자료입니다. 통계청은 각종 경제통계 작성을 지원하고자 매월 기업 창·폐업 정보를 활용하여 명부를 작성하고, 종사자, 매출액 등 관련 내용을 수록·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통계등록부는 산업 및 지역별 표본조사 프레임으로 활용하거나, 다른 데이터와의 추가 연계를 통해 다양한 분석 목적으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유럽의 많은 선진국도 통계등록부 활용을 확대하는 등 행정자료는 통계 생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료 원천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업통계등록부 이용 건수의 증가와 더불어 품질 측면의 개선을 위해 산업 및 주소 코드의 표준화 등 여러 단계에 걸쳐 데이터 정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행정자료'와 '통계등록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행정자료(Administrative Data)는 행정 및 공공기관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식대로 수집하는 자료로,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자료 및 과세자료, 4대 보험 자료 등이 있음
- 통계등록부(Statistical Register)는 통계 생산을 위해 행정자료와 통계자료를 연계하여 작성한 인구, 가구, 주택, 기업 대상의 모집단 자료임

✓ 주요 국가의 기업통계등록부

- (EU)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등 경제통계 생산을 위해 기업등록부 구축
- (미국) 국세청 등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구축하고, 센서스 조사 자료를 통해 보완
- (호주) 국세청의 사업자신고자료를 기반으로 구축, 경제통계 작성에 활용
- (영국) 국세청, 기업등록청 등 행정자료 및 민간자료를 이용하여 구축



2 작성연혁

통계청은 2017년부터 매년 연간 기업통계등록부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모집단 변화를 보다 시의성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분기(2019년~)와 월간(2023년~) 기업통계등록부를 추가로 제공 중입니다.

✓ 기업통계등록부 주요 연혁

- ('16년) 기업통계등록부 시범 구축
- ('17년) 연간 기업통계등록부 서비스 시작('10년~'15년)
- ('19년) 분기 기업통계등록부 서비스 시작('18년 4분기~'19년 2분기)
- ('20년) '20년 기준 경제총조사 기업통계등록부 기반 모집단 제공
- ('21년~'22년) 기준연도 대상 전국사업체조사 기업통계등록부 기반 모집단 제공
- ('23년) 월간 기업통계등록부 서비스 시작(7월, '23년 1월~6월)

<참고> 연간, 분기 및 월간 기업통계등록부 비교

- (연간) 행정자료에 전국사업체조사 등 조사 내용을 반영하여 명부가 포괄적임(연간: 15개월 시차)
- (분기 및 월간) 행정자료로만 구축하여 상대적으로 시의성이 높음(분기: 4개월, 월간: 1개월 시차)

구분	연간 기업통계등록부	분기 기업통계등록부	월간 기업통계등록부
기준시점	· 기준연도 12월 기준	· 분기말 기준	· 월말 기준
역 할	· 통계단위 모집단 제공	· 통계단위 명부 제공	· 통계단위 명부 제공
구축시기	· 기준연도 익익년 3월	· 매 익분기 익월(4, 7, 10, 12월)	· 매 익월 말
주요 작성 항목	명부	· 기업(사업체) 명부 - 행정자료+조사자료	· 기업(사업체) 명부 - 행정자료
	종사자 (유급 종사자)	· (종사자수) - 기준연도 12월 기준 · (종사상지위) - 상용, 임시·일용 * 사업체 단위까지 배분	· (종사자수) - 기준분기 말일 기준 · (종사상지위) - 상용, 임시·일용 * 기업 단위 제공 (사업체 배분 안함)
	매출액	· 기업, 사업체 매출액 제공 * 사업체 단위까지 배분	· 기업 매출액(전년도) 작성 * 기업 단위 제공 (사업체 배분 안함)

3

포괄범위

기업통계등록부는 전산업에 걸쳐 공공 및 민간, 영리 및 비영리 기관과 관계없이 행정자료와 통계조사를 통해 수집된 모든 기업을 포괄합니다.

4

통계 단위별 제공항목

기업통계등록부는 기업집단, 기업 및 사업체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제공항목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별, 주소, 종사자수, 매출액, 산업분류 등입니다.

〈주요 제공항목〉

구분	기업집단	기업	사업체
기본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성별, 출생년도, 개인대체식별번호) • 주소(시도 · 시군구 · 행정구역코드 · 법정동코드) • 등록일자 · 개업일자 · 폐업일자 · 폐업사유 		
특성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여 - 상용/임시 · 일용 • 매출액 • 소속 기업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여 - 상용/임시 · 일용 • 매출액(소분류 단위) • 산업분류(소분류, 3자리) • 기업규모(상출기업, 기타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여 - 상용/임시 · 일용 • 매출액(세세분류 단위) • 산업분류(세세분류, 5자리)
기타 정보 (사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판매대행/결제대행 건수 및 금액 •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 신재생에너지 특수산업분류별 영위여부, 종사자수, 매출액, 투자액 • 공간정보(x, y좌표, 격자정보) • 상권정보 및 전통시장 정보 		

5 작성 단위

기업통계등록부는 크게 법·행정 단위와 통계단위로 구성되며, 자료 간 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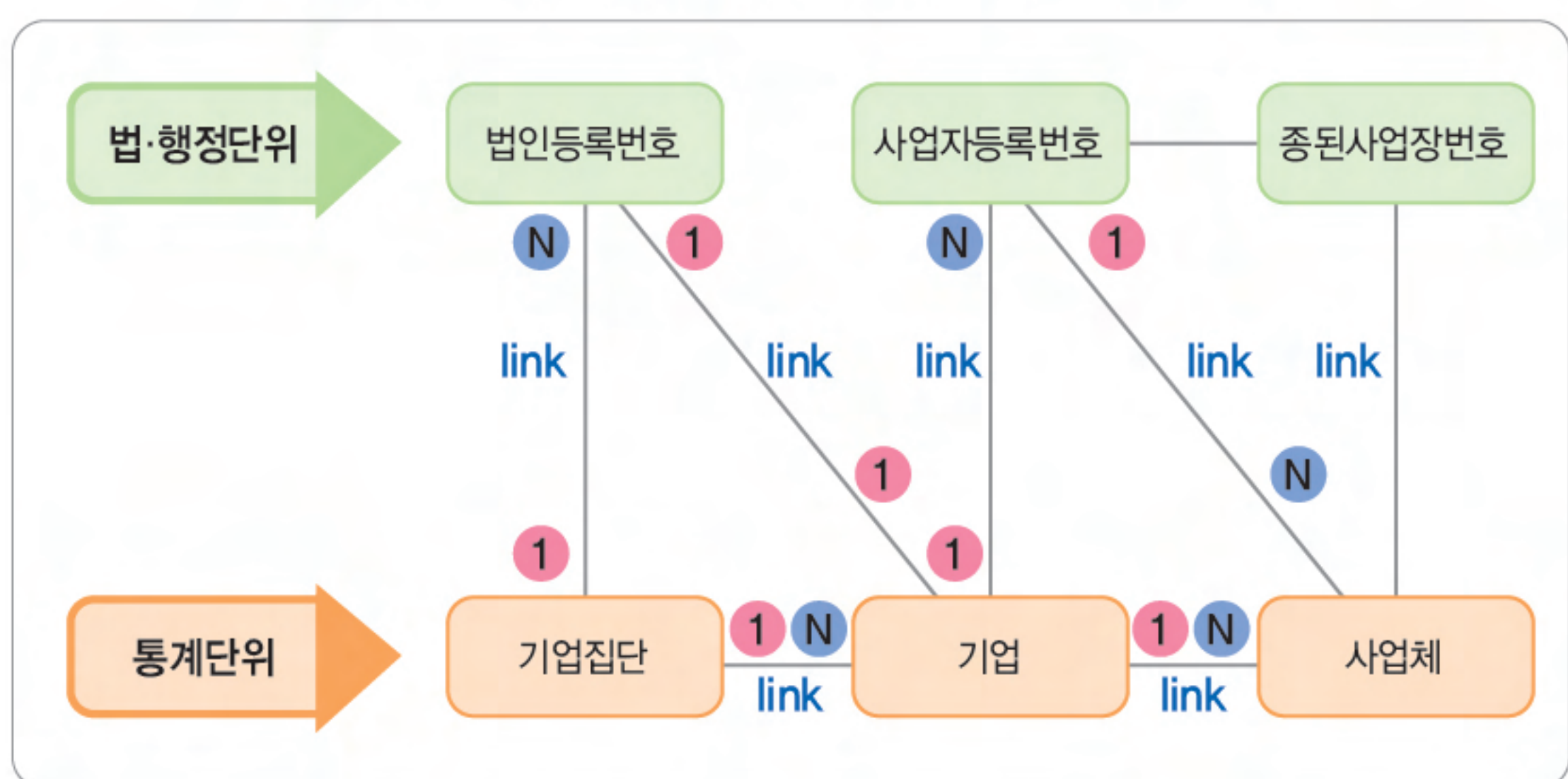
법·행정 단위의 유형은 투입되는 행정자료에 따라 법인, 사업자, 사업장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법인’은 상법¹⁾과 민법에 의거하여 생성되며 법원행정처의 법인등기자료로 관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²⁾을 기준으로 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자료로 관리하며, 부가가치세의 과세단위이기도 한 ‘사업장’은 국민연금 등 4대 보험기관과 근로기준법에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 1) 상법 제169조(회사의 의의)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통계청은 국제사회 상호 비교성 제고 등을 위해 유럽지역 통계청의 기업통계등록부 가이드 라인을 참고하여 통계단위 유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 UNECE Guide lines on Statistical Business Register(2015),
Eurostat Business Registers Recommendations Manual(2010)

법 행정단위와 통계단위 연계 관계



※ 법·행정단위란 법률에 의해 혹은 행정제도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단위

5.1. 법·행정 단위와 기업집단,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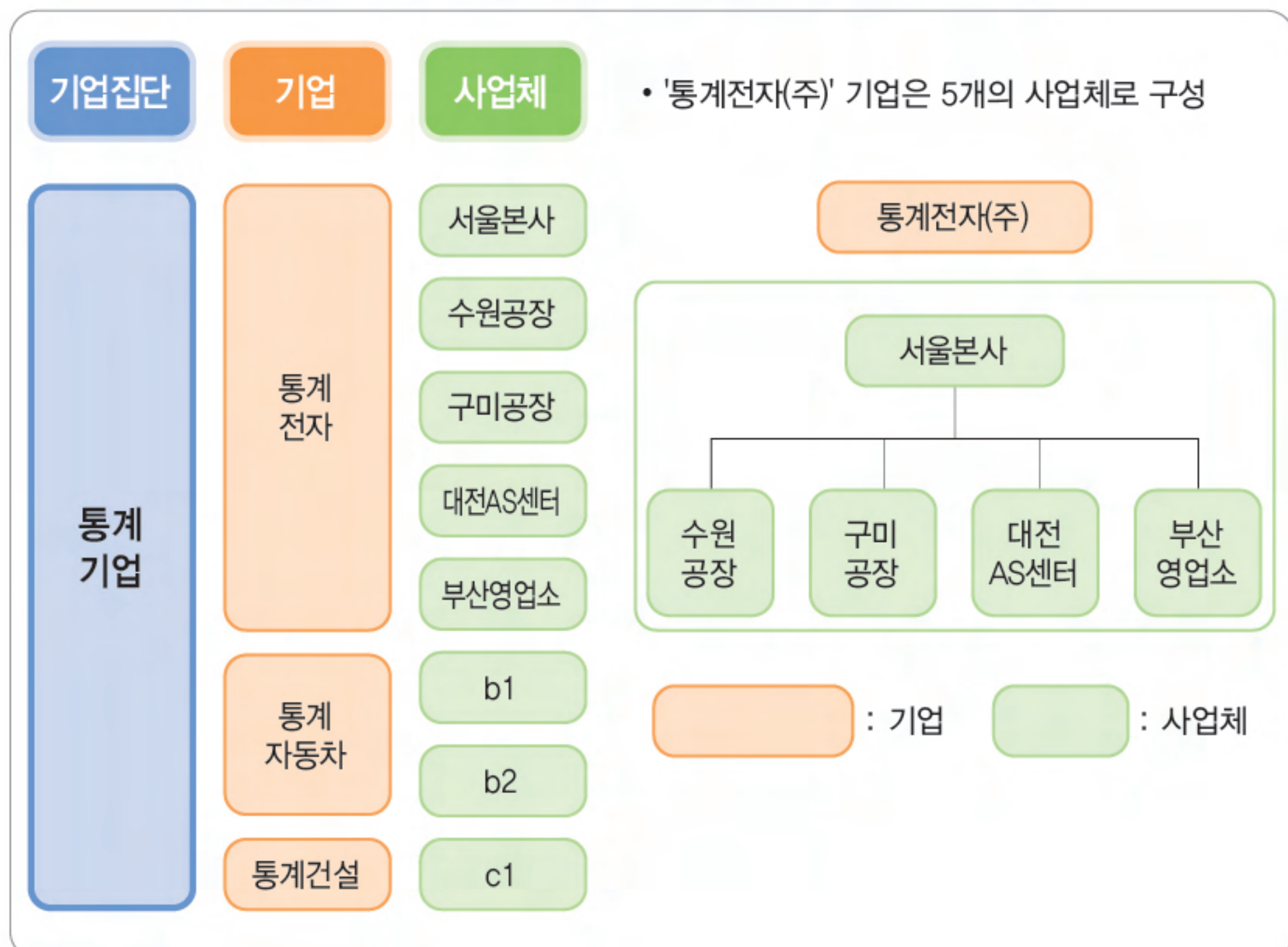
기업집단(Enterprise group)은 동일한 통제하에 법·재무적 관계로 결합된 법인기업들이 형성하는 집단입니다. 기업통계등록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법인등록번호와 1:N으로 연계됩니다.

기업(Enterprise)은 재무 및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재화·서비스를 생산하는 제도 단위로, 법인등록번호 또는 본점사업자등록번호 1개당 1개의 기업을 구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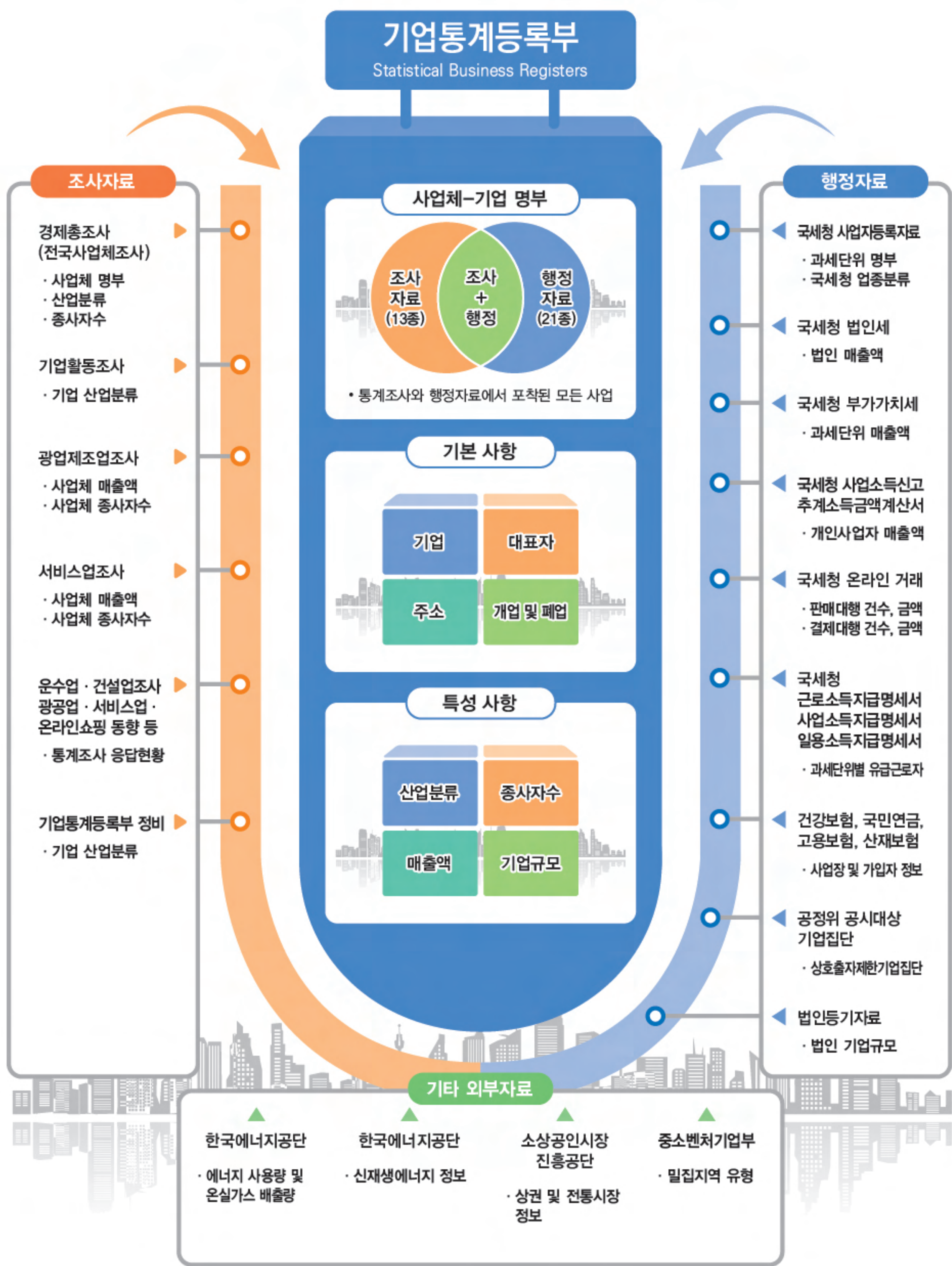
5.2. 법·행정 단위와 사업체

사업체(Establishment)는 기업을 산업활동과 장소로 구분하는 최소단위로, 사업자등록번호와는 N:1로 연계됩니다. 즉, 특정 기업에 속한 n개 사업체가 1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통계등록부는 기준연도에 1일 이상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과세사업자의 종된사업장 일련번호별로 각각 1개의 개별 사업체를 작성합니다

기업집단, 기업 및 사업체 구분 예시




<참고> 기업통계등록부 체계도





기업통계등록부 이용자 안내서

User Guide for Statistical Business Registers



SB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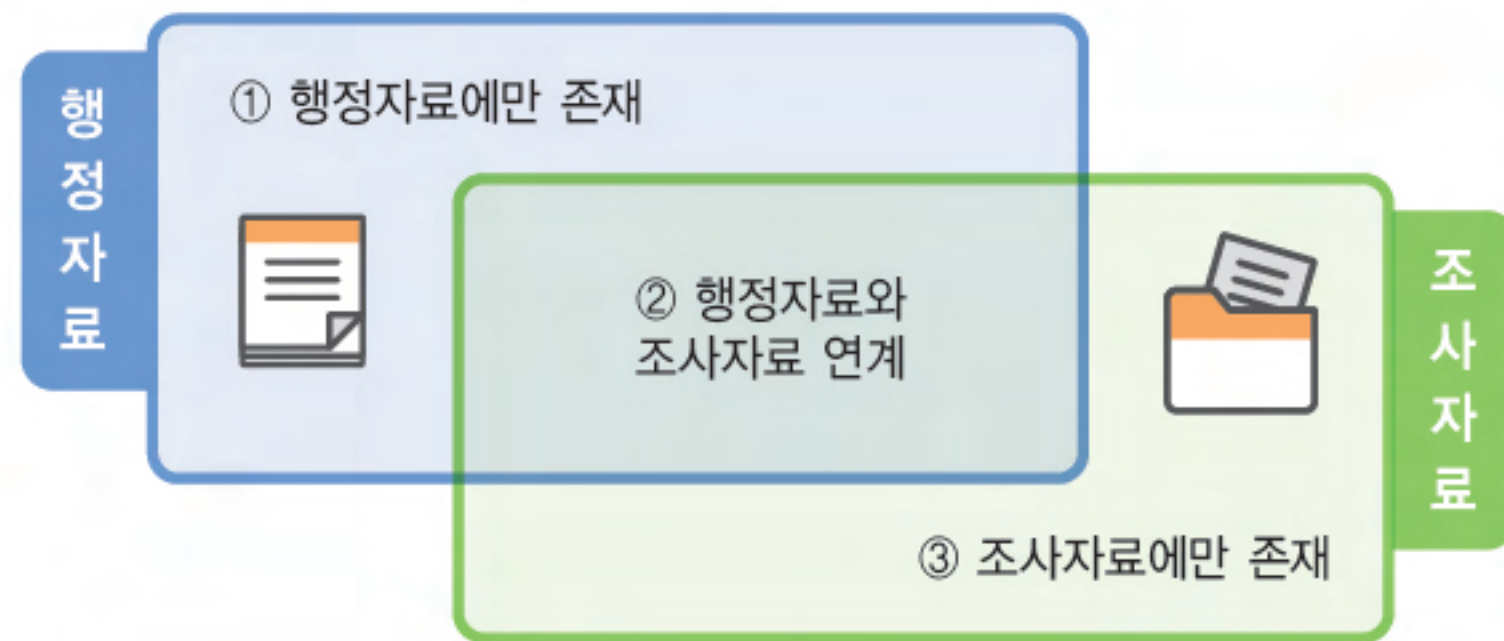
항목 이해하기

SBR 항목 이해하기

1 명부

명부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자료, 법인세 등 행정자료와 전국사업체조사 등 조사자료를 연계하여 작성합니다.

기업통계등록부 명부



- ① (행정자료에만 존재) 현장에서 조사되지 않았으나 행정자료로 존재가 확인된 사업자(체)
- ② (연계) 현장조사된 사업체가 행정자료로 확인되어 1:1로 연계된 사업체
- ③ (조사자료에만 존재) 현장에서 조사는 되었으나 행정자료에 존재하지 않는 사업체

- 통합된 명부는 먼저 '기업' 단위로 묶어서 분류합니다.
 - (법인기업)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기업 구분
 - (개인기업)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 기준으로 기업 구분
- 다음으로, 기업 정보를 활용하여, 기업 내 사업체 단위의 매출액 및 종사자 등을 작성합니다.

✓ 기업 단위 그룹핑 하는 방법은?

- 법인기업 기업 그룹핑 예시
 - 1개의 법인은 1개의 기업으로 처리
 - 1개의 법인이 3개의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도 1기업으로 처리
- 개인기업 그룹핑 예시
 - ※ 1명의 대표자가 3개의 사업자 등록시
 -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3개의 기업으로 처리
 - (대표자 기준) 1개의 기업으로 처리

2 기본 항목

구분	기본 항목
기업(사업체)	기준연도, 기업명(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등
대표자	대표자명, 대표자 성별, 출생연도 등
주소	행정구역분류코드, 시도, 시군구명 등
조직	조직구분, 조직형태, 공공기관 유형 등
개업 및 폐업	등록일자, 개업일자, 폐업일자, 폐업사유

기준연도

- 당해년도 12월 기준 가동사업체와 해당년도에 폐업한 사업체를 포함
- (가동사업체) 해당년도 12월 기준으로 작성
 - (폐업사업체) 해당년도에 폐업한 모든 사업체

대표자

사업자등록 자료상의 출생연도, 성별 정보 활용

- 등록된 각 항목의 값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환* 처리
- * (예1) 출생연도가 '1800' 이거나, 기준연도 보다 미래 시점인 경우 출생연도 '9999', 생년월일 '99999999' 로 입력
- * (예2) 성별이 1.남자, 2.여자 이외의 값일 경우 '9'로 입력

주소

사업자등록자료에 기재된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 주소를 활용하여 행정구역분류코드 작성

조직구분

1.개인, 2.법인

- 사업자등록번호를 구성하는 10자리 중 4, 5번째(2자리) 숫자가 '01~79, 90~99, 89, 80'이면 '개인', '81~88'이면 '법인'
- ※ 법인등록자료를 반영하여 일부 수정·보완

조직형태

법인등록번호 5, 6번째 자리 및 사업자등록번호 4, 5번째 자리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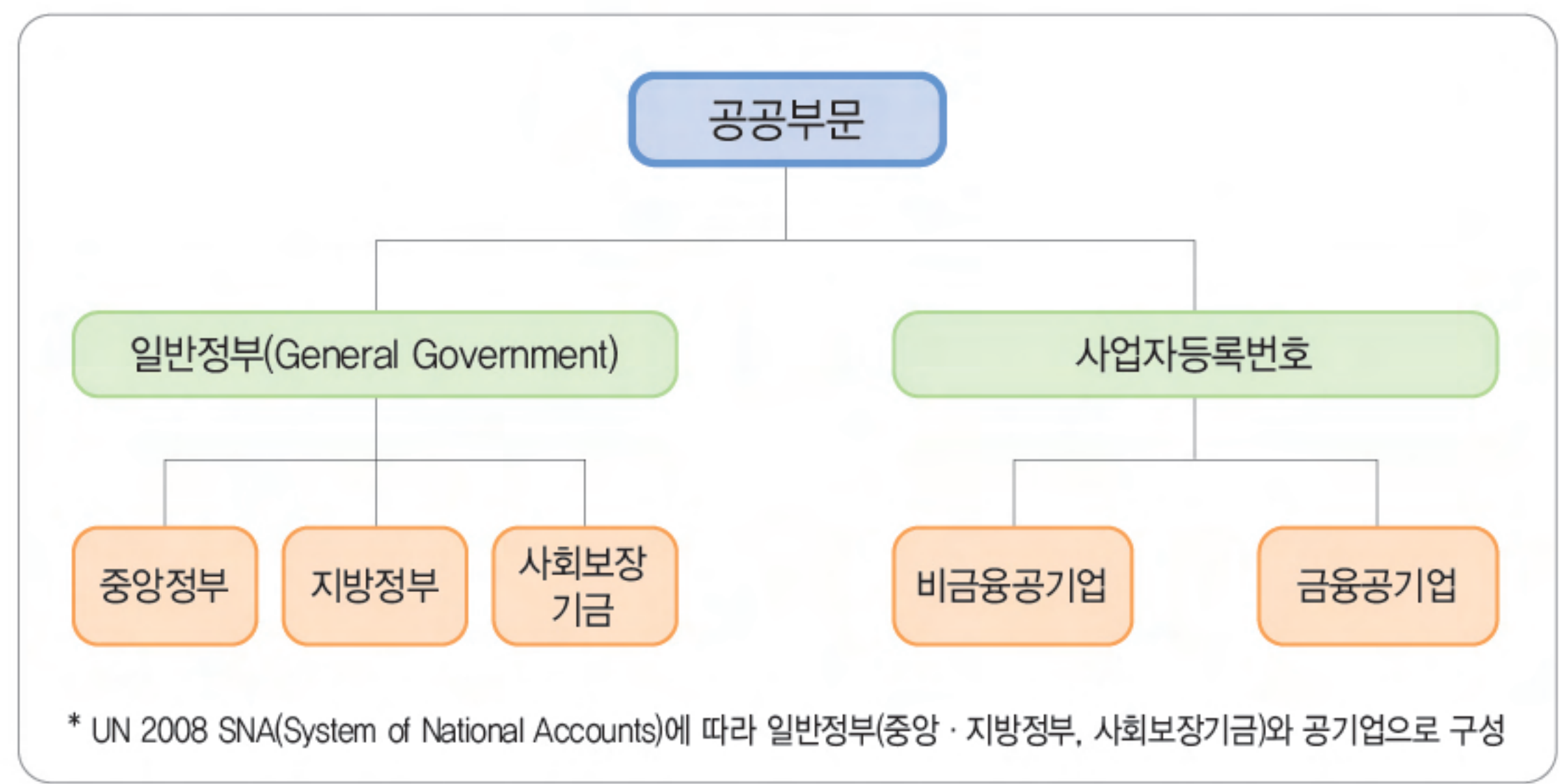
조직형태	종류	구분코드	설명
①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01~79	개인과세사업자
		90~99	개인면세사업자
② 회사법인	법인등록번호	11~15	주식회사,합명회사 등 상법법인
		81~86	주식회사,합명회사등 외국법인
	사업자등록번호	81,86~88	단독,영리법인 본사(사), 본부
		84	외국법인의 본지점
		85	영리법인의 지점
③ 회사이외법인	법인등록번호	21~22	사단재단 등 민법법인
		31~51, 71	학교법인, 조합 등 특수법인
	사업자등록번호	82	비영리법인의 본지점
④ 비법인단체	사업자등록번호	80, 89	법인격이 없는 단체나 모임
⑤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자등록번호	8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부기관

※ 어린이집이 비법인단체(80)로 되어있더라도 개인이 운영할 경우 '개인사업체'로 구분

※ 점술집 등이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89)로 되어 있더라도 개인이 운영할 경우 '개인사업체'로 구분



공공기관 유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거하여 공공기관 선정



〈공공기관 유형에 대한 설명 및 예시〉

공공기관 유형	설명	예시
① 중앙정부기관	부·처·청 등 중앙정부와 중앙정부의 지배를 받는 공공비영리단체로 구성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② 중앙정부비영리단체		도로교통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③ 지방정부기관	지방정부, 지방정부의 지배를 받는 공공비영리단체로 구성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
④ 지방정부비영리단체		시설관리공단, 도시철도공사, 교통공사, 복지재단, 문화재단 등
⑤ 사회보장기금	정부기관이 통제할 수 있는 사회보험 제도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⑥ 공기업비금융공기업중앙	정부의 지배(주로 정부 소유)를 받으면서 시장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단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등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교병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⑦ 기업비금융공기업지방		서울디자인재단, 세종문화회관, 동대문문화재단, 서울관광재단 등
⑧ 공기업금융공기업중앙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등록일자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 사업자단위 과세적용 사업체는 '적용일자'를 기준으로 함

✔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체의 적용일자는?

- 국세청은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관리의 편리함을 위하여 대표자가 '사업자 등록번호 N개'를 '1개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사업자단위 과세')를 두고 있다. 이 경우 본점 1개를 지정하고 나머지 사업체는 '일련번호'를 부여받게 되는데, 이 날짜가 '적용일자' 이다

개업일자

대표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기입한 '개업일'

폐업일자

대표자가 휴·폐업 신고서에 기입한 '폐업일'

폐업사유

신고자가 '폐업사유 범주' 내에서 선택

폐업사유 범주 부가가치세 시행규칙[별지 제9호 서식] 휴업(폐업)신고서

- | | |
|-------------|--------------------------|
| ① 사업부진(폐업) | 〈그 외〉 |
| ② 행정처분(폐업) | - 과세겸업에 의한 면세폐업 |
| ③ 계절사유(폐업) | - 구등록폐지 |
| ④ 법인전환(폐업) | - 사업자단위과세 포기로 인한 폐쇄 |
| ⑤ 면세포기(폐업) | - 사업자단위과세(종사업장)자로 전환폐업 |
| ⑥ 면세적용(폐업) | - 세법개정에 의한 면세전환 |
| ⑦ 법인해산(합병) | - 세법에의해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관련 폐지 |
| ⑧ 양도·양수(폐업) | - 제적에의한폐업 |
| ⑨ 기타(폐업) | - 종사업장 폐쇄 |

폐업 신고일자

대표자가 폐업을 신청한 날



주의사항

기업통계등록부는 등록일과 폐업일을 기준으로 신규사업체와 폐업사업체를 구축함
등록일과 폐업일은 대표자가 신고시 기입한 개업날짜 또는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한 날짜와는 다를 수 있음

3

특성항목

산업분류

사업체와 기업의 산업분류는 사업자등록자료의 업종코드를 활용(자동연계시스템)하여 작성하였으며, 2015년 이후 자료는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이전 자료는 9차 산업분류를 적용하였습니다.

사업체는 세세분류(5자리), 기업은 소분류(3자리) 단위까지 산업분류 코드를 부여하였습니다.

종사자 수 (단위: 명)

- 종사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자료와 국세청의 소득지급명세서 등으로 파악이 가능한 해당연도 12월 31일 기준의 유급 종사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종사자 작성 시 개인기업의 대표자는 제외합니다.

종사자 수는 '상용'종사자와 '임시및일용'종사자로 구분하여 작성

- 근무일수 365일 → 상용종사자
- 근무일수 365일 미만 → 임시및일용종사자

매출액 (단위: 백만원)

매출액은 법인세, 사업소득신고(복식, 간편), 부가가치세 등 자료를 활용하여 기업 단위로 작성합니다.

법인기업 매출액은 법인세 '손익일반 매출액'과 '손익금융 영업수익'으로 작성하는 한편, 개인기업 매출액은 사업소득신고(복식기장, 간편장부)를 활용합니다.

또한 '기업 3개년 평균 매출액'은 개업일자를 기준으로 해당연도를 포함하는 직전 3개년도의 매출액 평균이며, 중간에 폐업되었더라도 신고된 매출액을 적용하여 작성합니다.

① 사업자등록자료에 '개업일자'가 있는 경우

- 해당연도 포함 개업일자가 36개월 이상 ▶ 해당연도 포함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
- 해당연도 포함 개업일자가 24개월~36개월 미만 ▶ 해당연도 포함 직전 2개년 매출액 평균
- 해당연도 포함 개업일자가 24개월 미만 ▶ 해당연도 매출액

② 사업자등록자료에 '개업일자'가 없는 경우

- 직전년 매출액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연도 매출액을 포함하여 평균을 작성
- 모두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매출액만 적용

● 기업의 산업분류(대, 중, 소분류)별 매출액 항목

기업의 산업분류별 매출액은 해당 기업의 산업분류(대, 중, 소분류)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임

➡ 기업의 산업분류별 매출액 예시

통계전자(주) 기업의 대표산업분류는 'C 제조업'이며 이와 동일한 기업내 사업체 산업 대분류의 매출액은 70%, 동일 사업체 산업 중분류(26)는 60%, 산업 소분류(261)는 30%임

사업체명	BR_GI	기업 총 매출액	산업 대분류		산업 중분류		산업 소분류	
			대분류	매출액합	중분류	매출액합	소분류	매출액합
통계전자(주)	1	100억	C	70억	26	60억	261	30억

1) 대분류 'C'에 대한 매출액 합

사업체명	사업체 매출액	산업 대분류
합 계	100억	C
통계전자 서울 본사	15억	M
통계전자 수원공장	30억	C
통계전자 구미공장	30억	C
통계전자 대전AS 센터	10억	C
통계전자 부산영업소	15억	N

2) 중분류 '26'에 대한 매출액 합

사업체명	사업체 매출액	산업 중분류
합 계	60억	26***
통계전자 서울 사무소		71***
통계전자 수원 공장	30억	26***
통계전자 구미 공장	30억	26***
통계전자 대전 공장		27***
통계전자 부산영업소		74***

3) 소분류 '261'에 대한 매출액 합

사업체명	사업체 매출액	산업 대분류	산업 소분류
합 계	30억	C	261**
통계전자 서울 사무소		M	715**
통계전자 수원 공장	30억	C	261**
통계전자 구미 공장		C	262**
통계전자 대전 공장		C	272**
통계전자 부산영업소		N	741**

기업규모

기업규모는 관련 법령에 따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분류합니다



✓ 기업규모 관련 법안

- 대기업(상출기업) :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공정거래위원회)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시행령(산업통상자원부)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중소벤처기업부)

▶ (코드 유형)

- 1:상출기업, 2:기타대기업, 3:중견기업, 4:중기업, 5:소기업, 6:소상공인, 91:기업규모 판정 제외 사업자

1 (대기업) 상출기업(1)과 기타대기업(2)으로 구성

- 상출기업 :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5월 고시) 지정하는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합계액이 10조원 이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 '22.5월 기준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등 47개 기업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
- 기타대기업 : 기업집단 중 상출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과 중견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
 - 공기업 및 일부 영리 공공기관, 금융보험업(일반지주회사 제외) 기업, 자산 10조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중견기업 독립성 기준) 등으로 구성

2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아니며, 대기업(상출기업)도 아닌 기업(3)

- 중견기업 :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보다 크거나, 자산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규모 기준) 및 중견기업의 피출자기업이거나, 관계기업과 합산한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독립성 기준)

3 (중소기업) 중기업(4)과 소기업(5), 소상공인(6)으로 구성

- 중기업 :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가 중소기업이면서, 소기업 규모보다 큰 기업
- 소기업 :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가 소기업인 기업으로 소상공인은 미포함
- 소상공인 : 소기업 중에서 종사자 수가 10명 미만인면서, 업종별 종사자 수 등이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4 (기업규모 제외) 기업규모 판정 제외 사업자(91)

- 산업대분류가 null, 공공·국방·사회보장행정(O), 가구내고용활동(T), 국제·외국기관(U), 비영리기업

4 기타항목

활동구분 매출액, 종사자 존재 여부에 따라 사업체 및 기업 활동 상태를 구분

- ▶ (코드 유형) 1. 활동, 2. 비활동, 3. 폐업
- 활동 : 사업체 매출액 또는 종사자 수가 존재하는 경우
 - 비활동 : 매출액과 종사자 수가 'null' 이거나 '0'인 경우
 - 폐업 : 폐업 여부가 'Y'라고 표시된 경우

사업체고유번호 기업통계등록부와 조사자료(전사체 등) 연계를 위한 고유Key

BR사업체고유번호 연간 자료간 또는 연간과 분기, 월간 자료간 연계를 위한 고유Key

BR기업고유번호 동일 기업을 그룹핑하기 위한 Key로서, 본점사업체의 'BR사업체고유번호'를 'BR기업고유번호'로 작성

※ BR사업체고유번호 관리체계 개선 추진('21년 6~12월)

- 분기 및 연간 기업통계등록부 간 동일 사업체고유번호 적용으로 분기·연도별 시계열 연계·분석 가능

	개선 전		개선 후
	연간	분기	연간, 분기, 월간
자리 수	10자리	11자리	11자리
작성 방식	행정 사업체고유번호 + 조사 사업체고유번호	행정 사업체고유번호	행정 사업체고유번호
시계열 연계	연도별 연계 가능 분기 SBR과 연계 불가능	연도 변경 시 연계 불가능 연간 SBR과 연계 불가능	분기 및 연도별 연계 가능 분기와 연간 SBR 간 연계 가능
(예시)	A사업체의 고유번호 (2019) 3119123456 (2020) 3119123456	A사업체의 고유번호 (19.4Q) 81191234567 (20.4Q) 81201234567	A사업체의 BR 고유번호 (19.4Q, 2019년) 81191234567 (20.4Q, 2020년) 81191234567

✓ 기업 자료 분석시 참고사항

- (기업 구분, BR_GI) 기업 본점을 구분하기 위해 기업 구분키를 부여합니다. 기업 구분 값이 "1" (BR_GI=1)이면 기업 본점에 해당
- (기업내 사업체수, GI_CNT) 동일 기업 내 사업체가 몇 개인지를 의미

✓ 법인기업 '사업체 구분' 작성 방법

- 전국사업체조사의 사업체 구분 (1: 단독사업체, 2: 본사/본점, 3: 지사/지점)
- SBR의 구분 방법
 GI_CNT(기업 내 사업체 수) = '1' AND BR_GI = '1' : 단독사업체
 GI_CNT(기업 내 사업체 수) > '2' AND BR_GI = '1' : 다사업체 중 본사/본점
 GI_CNT(기업 내 사업체 수) > '2' AND BR_GI가 NULL : 다사업체 중 지사/지점

5

기후변화 관련 항목(한국에너지공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업통계등록부 항목 확대

①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실태조사」

- (항목) 에너지원별(6종)*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총 12개

* 석탄류, 석유류, 도시가스, 기타연료, 전력, 열에너지

- 에너지사용량(toe): 사업체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 에너지를 모두 포함
- 온실가스 배출량(tCO2dq): 사업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②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

- (항목) 특수산업분류별(4종)** 영위여부, 종사자수, 매출액, 투자액 총 16개

** 제조업, 건설업, 공급업, 서비스업



기업통계등록부 이용자 안내서

User Guide for Statistical Business Regis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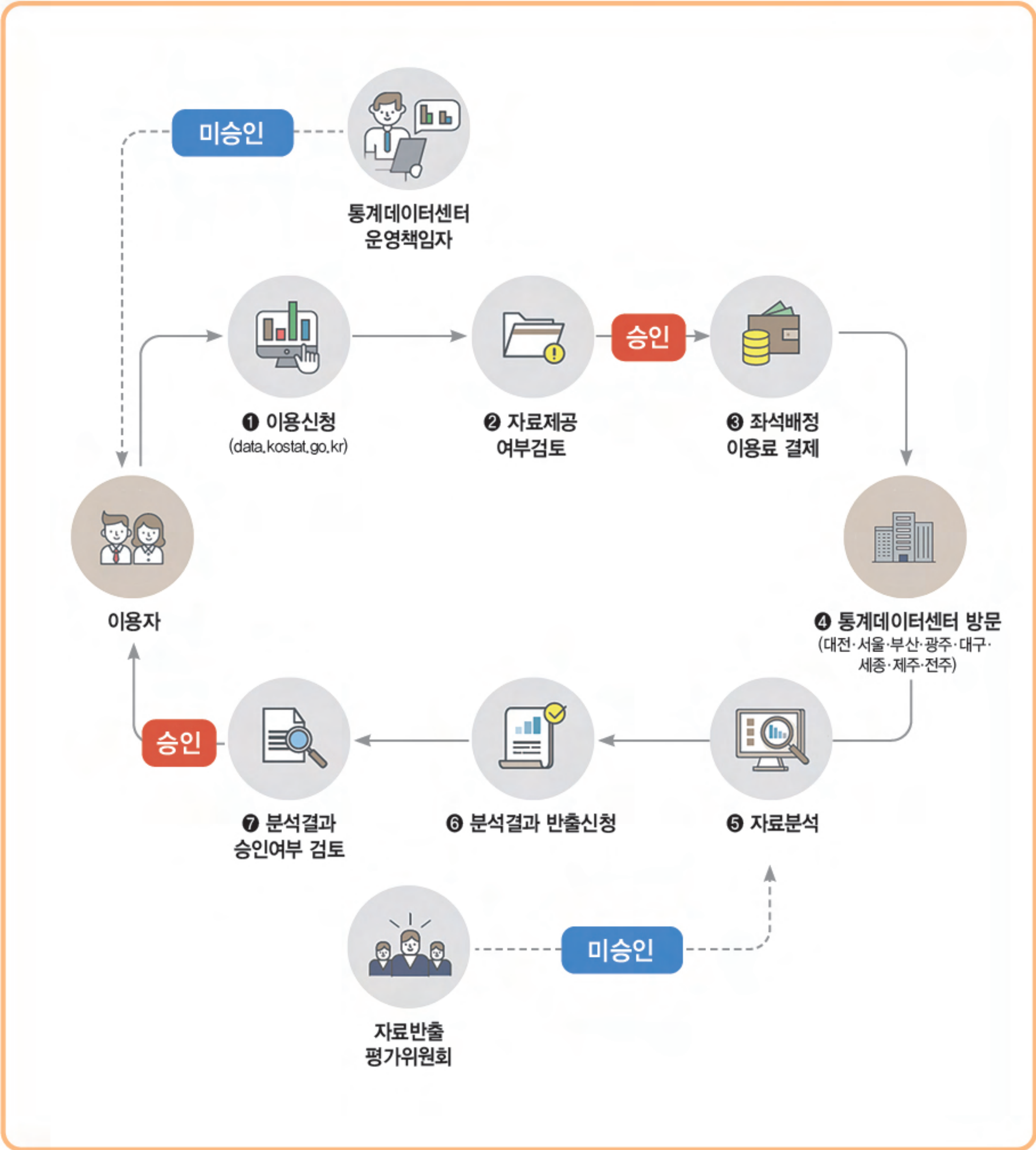


SBR 이용하기

SBR 이용하기

1 이용 절차

통계데이터센터(SDC) 이용절차



2 이용 형태 및 제공항목

기업통계등록부는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 국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센터에서 기업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정보 보호를 위해 집계표 형태로만 반출 가능합니다.

또한, 통계작성기관이 국가승인통계 작성 목적으로 조사명부를 요청할 경우 식별정보를 포함한 명부자료가 반출 가능합니다

외부제공 항목 이용목적(명부 추출용, 데이터분석용)에 따라 제공항목 다름

	연간 기업통계등록부	분기, 월간 기업통계등록부
명부 추출용	83개 항목 제공	분기: 62개, 월간: 54개 항목 제공
	기업(사업체) 기본 항목 - 대표자명, 주소, 조직형태 등 산업분류(세세분류, 5자리) - 기업 산업분류는 소분류(3자리) 기업(사업체) 종사자 기업(사업체) 매출액 기업규모 기업 3개년 평균매출액 BR기업(사업체) 고유번호 등	기업(사업체) 기본 항목 - 대표자명, 주소, 조직형태 등 산업분류(세세분류, 5자리) - 기업 산업분류는 소분류(3자리) 기업 종사자 기업 매출액(전년도) BR기업(사업체) 고유번호 등
데이터 분석용	100개 항목 제공	분기: 49개, 월간: 41개 항목 제공
	기업(사업체) 기본항목 - 사업체명, 전화번호, 상세주소 정보 제외 산업분류(세세분류, 5자리) - 기업 산업분류는 소분류(3자리) 기업(사업체) 종사자 기업(사업체) 매출액 기업규모 기업 3개년 평균매출액 에너지원별 에너지 사용량 에너지원별 온실가스 배출량 신재생에너지 특수산업분류별 영위여부, 종사자수, 매출액, 투자액 등	기업(사업체) 기본항목 - 사업체명, 전화번호, 상세주소 정보 제외 산업분류(세세분류, 5자리) - 기업 산업분류는 소분류(3자리) 기업 종사자 기업 매출액(전년도) 등

명부반출 가능 항목 국가승인통계 또는 승인 준비중인 통계 대상

- 사업체명, 소재지, 개업일자, 조직형태, 기업대표여부, 산업분류(세세분류), 종사자수(구간화값), 매출액(구간화값), 전화번호
- 표본의 3배수 제공(예비표본 포함)

3 이용시 참고사항

- 제공 시점
 - (연간) 익익년 4월 (분기) 5, 8, 11, 익년 1월 (월간) 익월 말
- 작성 기준
 - (연간) 기준연도 12월 자료로, 연 1회 구축 및 제공합니다.
 - 기준연도 내 폐업 신고한 사업체 및 신규 등록한 사업체 모두 포함
 - (분기) 기준연도 3, 6, 9, 12월 자료로, 연 4회 구축 및 제공합니다.
 - 기준연도 내 폐업 신고한 사업체 모두 포함
 - (월간) 기준월 자료로, 연 12회 구축 및 제공합니다.
 - 기준연도 내 폐업 신고한 사업체는 모두 포함하되, 종사자 수는 최근 분기 자료를 사용함

✓ 분기 및 월간 SBR

- (기업 종사자) 관련 행정자료 입수 시기로 인해 분기별 종사자로 작성하고 있으며, 행정자료로만 구축되기 때문에 기업 단위로만 작성
- (기업 매출액) 관련 행정자료는 연 1회, 연간 실적으로 입수되어 분기별 매출액 작성은 어려우며, 표본설계 등 참고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업의 전년도 연간 매출액으로 작성
 - ※ 행정자료로만 구축되기 때문에 기업 단위로만 작성

▶ 분기 매출액 예시

기준연도	2022년				2023년			
기준분기	1	2	3	4	1	2	3	4
기업 매출액 (전년도)	21년 행정	21년 행정	21년 행정	21년 SBR (조사+행정)	22년 행정	22년 행정	22년 행정	22년 SBR (조사+행정)

- 산업분류
 - (결정 원칙) 복합적인 산업활동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액)이 큰 산업을 주된 산업활동으로 결정합니다.
 - (적용 원칙) 복합적인 활동단위는 우선적으로 최상급 분류단계(대분류)를 정확히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소·세·세세분류 단계 항목을 결정합니다.(Top_down 방식)
 - (제공 범위) 사업체 산업분류는 세세분류(5자리), 기업 산업분류는 소분류 (3자리)로 제공합니다.
 - ※ 기업 단위는 기업 내 부가가치 창출원의 다각화로 특정 산업활동으로 분류하기에 한계가 존재하여, 통계청 내 기업 단위 경제통계는 소분류(3자리)까지만 공표

- 행정자료의 산업분류는 국세청 업종코드를 활용하여 산업분류로 변환하며, 1개 업종에 다수의 산업분류가 연계될 경우 대표 자리까지만 변환하여 세세분류이지만 5자리가 아닌 경우도 존재합니다.

● 기업 그룹핑 방식

- 기업 그룹핑 방식에 따라 ① 대표자 기준 자료, ② 사업자등록 번호 기준 자료로 구분됩니다.

- 법인기업은 대표자 기준과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자료가 동일하나, 개인기업은 기업 그룹핑 기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 기업 그룹핑 방식에 따라 사업체 수(레코드 수), 법인기업의 매출액, 종사자 항목은 동일하나, 개인기업의 매출액, 종사자 항목은 상이함



✓ 개인기업 그룹핑 방식

① (대표자 기준) 대표자의 개인대체식별번호 단위로 기업으로 구분

예) 1명의 개인이 2개의 사업자등록 시 1개 기업으로, 2개 사업체로 처리

②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기업 구분

예) 1명의 개인이 2개의 사업자등록 시 2개 기업으로, 2개 사업체로 처리

● 항목별 공란(null)

- 입수된 원 행정자료 상 공란(null)으로 인해 자료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공란(null)

· (분기 및 월간) 행정자료만으로 구축되어 사업자등록번호 공란(null)이 없음

· (연간)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결합하여 구축, 조사자료에 포함된 무등록 사업체로 인해 사업자등록번호 공란(null)이 존재

4

활용 사례

기업통계등록부는 관련 자료 간 연계의 핵심 축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통계 생산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① 모집단으로 활용

- (중기부) 「기업단위 중소기업 기본통계」 첫 발표 ('19.11., 보도자료)
 - 중소벤처기업부는 통계청과 협업해 기업단위로 중소기업 기본통계를 새롭게 작성,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전자상거래업, 부동산업 등 그 동안 사업체 통계에서 제외됐던 기업까지 포함하여 작성(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전자상거래업, 부동산업 등 사업체 통계에서 제외됐던 기업까지 포함하여 작성)
- (산업부) 「중견기업 기본통계」 모집단을 기업통계등록부로 변경 ('21.12., 보도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와 통계청 간 협업으로 이원화되어있던 중견기업 통계를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반 구축

② 통계 개선

- (통계청) 경제총조사 '물리적 장소가 없는 사업체'도 포괄
 - 기업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기존의 물리적 장소가 있는 사업체 뿐만 아니라, 가구내 전자상거래 등 물리적 장소가 없는 사업체도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모집단 확대
- (농식품부) 농업법인조사 조사대상 '실질 운영중인 농업법인'으로 포괄범위 개선
 - 휴·폐업이 잦은 농업법인 특수성을 고려, 기존 등록된 농업법인에서 SBR 활용하여 '법인세 신고 자료가 있는 활동법인'으로 조사대상 포괄범위 명확화

③ 신규통계 개발

- (경기도) 코로나 회복지원을 위해 통계청과 「영세자영업자 경영현황」 개발 추진 ('21.5.13, 보도자료)
 - 경기도는 통계청과 협업해 영세자영업 경영활동 현황, 생존율 현황, 매출액 현황 등 통계를 개발하여 영세자영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
- (부산) 부산시,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수립.. 「부산광역시 소상공인통계」 개발 추진 ('22.3.11, 보도자료)
 - 부산시는 통계청과 협력해 부산의 모든 소상공인 기업(사업체)를 대상으로 분기별 소상공인 기본현황 및 창·폐업, 연간 생존율 등 정책지표를 제공하는 '부산시 소상공인통계'를 개발



부록

1

기업통계등록부 레이아웃

순번	연간 분기/월간	연간	분기/월간	항목설명	명부추출		센터 분석	
					연간 (83개)	분기 (62개) /월간 (54개)	연간 (100개)	분기 (49개) /월간 (41개)
1	1	BASE_YEAR	BASE_YEAR	기준연도	○	○	○	○
-	2	-	BASE_QU/BASE_MON	기준분기/기준월	-	○	-	○
2	3	BIZRNO	BIZRNO	사업자등록번호	○	○	○	○
3	4	JURIRNO_1	JURIRNO_1	법인등록번호	○	○	○	○
4	-	ESTM_NTE_NUM	-	사업체고유번호	○	-	○	-
5	5	BR_JOJIK	BR_JOJIK	조직구분(1:개인, 2:법인)	○	○	○	○
6	6	ORG_FORM_CD	ORG_FORM_CD	조직형태코드 (1:개인사업체, 2:회사법인, 3:회사이외법인, 4:비법인단체, 5:국가지방자치단체)	○	○	○	○
7	-	GOV_PBL_CD	-	공공기관유형코드 (1:중앙정부기관, 2:중앙정부비영리단체, 3:지방정부기관, 4:지방정부비영리단체, 5:사회보장기금, 6:공기업비금융공기업중앙, 7:공기업비금융공기업지방, 8:공기업금융 공기업중앙)	○	-	○	-
8	7	BIZ_NM	BIZ_NM	사업체명	○	○	X	X
9	-	SURV_BIZ_NM	-	사업체명(사업체및총조사)	○	-	X	-
10	8	BPLC_TEL_NO	BPLC_TEL_NO	사업장전화번호	○	○	X	X
11	-	SURV_BPLC_TEL_NO	-	사업장전화번호(사업체및총조사)	○	-	X	-
-	9	-	NEW_BPLC_TEL_NO	사업체전화번호 /기업통계등록부 정비 추가 항목/	-	○	-	X
12	10	SRTY_DSMT_NUM	SRTY_DSMT_NUM	개인대체번호	○	○	○	○
13	11	RPRSNTV_NM	RPRSNTV_NM	대표자성명	○	○	△	△
14	12	RPRSNTV_SEXDSTN	RPRSNTV_SEXDSTN	대표자성별(남:1, 여:2, 기타:9)	○	○	○	○
15	13	YBTH	YBTH	대표자출생년도	○	○	○	○
16	14	YBTH_MD	YBTH_MD	대표자생년월일	X	X	△	△
17	15	REGIST_DE	REGIST_DE	등록일자	○	○	○	○
18	16	OPBIZ_DE	OPBIZ_DE	개업일자	○	○	○	○
19	17	CLSB_DE	CLSB_DE	폐업일자	○	○	○	○
20	18	CLSB_YN	CLSB_YN	폐업여부	○	○	○	○
21	19	CLSB_RSN	CLSB_RSN	폐업사유	○	○	○	○
22	20	CLSB_PROC_DE	CLSB_PROC_DE	폐업신고일자	○	○	○	○

순번		연간	분기/월간	항목설명	명부추출		센터 분석	
연간	분기/월간				연간 (83개)	분기 (62개) / 월간 (54개)	연간 (100개)	분기 (49개) / 월간 (41개)
23	-	CRT_ADMIN_DATA_DIV	-	자료구분 (K:사업자등록, B:부가세, V:법인세, S:조사 자료)	X	-	O	-
24	-	DIV_CD	-	매칭구분 (M:매칭, R:재매칭, H:행정, S:조사, MH:기업 단위 잔존행정, MS:기업단위 잔존조사)	O	-	O	-
25	21	CP_CD	CP_CD	시도코드	O	O	O	O
26	22	CDW_CD	CDW_CD	시군구코드	O	O	O	O
27	23	ZONE_CD	ZONE_CD	행정구역분류코드	O	O	O	O
28	24	CP_NM	CP_NM	시도명	O	O	O	O
29	25	CDW_NM	CDW_NM	시군구명	O	O	O	O
30	26	TTM_NM	TTM_NM	읍면동명	O	O	X	X
31	27	GA_VILL	GA_VILL	가리명	O	O	X	X
32	28	REGAL_DONG_CODE	REGAL_DONG_CODE	법정동코드	O	O	O	O
33	29	MNTN_HSNB	MNTN_HSNB	산(0:토지, 1:산)	O	O	X	X
34	30	PTDE_HSNB	PTDE_HSNB	지번본번	O	O	X	X
35	31	RGST_HSNB	RGST_HSNB	지번부번	O	O	X	X
36	32	TONG	TONG	통	O	O	X	X
37	33	BAN	BAN	반	O	O	X	X
38	34	ROD_NM	ROD_NM	도로명	O	O	X	X
39	35	ROD_NM_CD	ROD_NM_CD	도로명코드	O	O	X	X
40	36	UGRND_FLR_DIV	UGRND_FLR_DIV	지하(0:지상, 1:지하, 2:공중)	O	O	X	X
41	37	BUDI_PTDE_HSNB	BUDI_PTDE_HSNB	건물본번	O	O	X	X
42	38	BUDI_RGST_HSNB	BUDI_RGST_HSNB	건물부번	O	O	X	X
43	39	BUDI_NM	BUDI_NM	건물명	O	O	X	X
44	40	BUDI_BLD_NM	BUDI_BLD_NM	건물동	O	O	X	X
45	41	BUDI_FLR_NM	BUDI_FLR_NM	건물층	O	O	X	X
46	42	BUDI_DR_NM	BUDI_DR_NM	건물호	O	O	X	X
47	43	BR_NTE_NUM	BR_NTE_NUM	BR사업체_고유번호	O	O	O	O
48	-	BR_ACT	-	활동구분(1:활동, 2:비활동, 3:폐업)	O	-	O	-
49	-	BR_AMTC	-	BR사업체_매출액(배분)	O	-	O	-
50	44	BR_EMP_MF_T	BR_EMP_MF_T	BR사업체_총종사자(합계)	O	X	O	X
51	45	BR_EMP_T	BR_EMP_T	BR사업체_상용근로자(합계)	O	X	O	X

* △는 센터 내 연계 서비스용 연계키로만 활용 가능하며, 이용자 제공은 불가

순번	연간 분기/월간	연간	분기/월간	항목설명	명부추출		센터 분석	
					연간 (83개)	분기 (62개) /월간 (54개)	연간 (100개)	분기 (49개) /월간 (41개)
52	46	BR_EMP_M	BR_EMP_M	BR사업체_상용근로자(남)	○	X	○	X
53	47	BR_EMP_F	BR_EMP_F	BR사업체_상용근로자(여)	○	X	○	X
54	48	BR_IMSI_T	BR_IMSI_T	BR사업체_임시및일용근로자(합계)	○	X	○	X
55	49	BR_IMSI_M	BR_IMSI_M	BR사업체_임시및일용근로자(남)	○	X	○	X
56	50	BR_IMSI_F	BR_IMSI_F	BR사업체_임시및일용근로자(여)	○	X	○	X
57	51	BR_SANUP	BR_SANUP	BR사업체_산업분류코드(대)	○	○	○	○
58	52	BR_SNB_CD	BR_SNB_CD	BR사업체_산업분류코드(세세분류)	○	○	○	○
59	53	GI_CNT	GI_CNT	기업 내 사업체 수	X	X	○	○
60	54	BR_GI	BR_GI	BR기업(1:대표)	○	○	○	○
61	55	BR_GI_KEY	BR_GI_KEY	BR기업_고유번호	○	○	○	○
62	-	BR_GI_ACT	-	BR기업_활동여부(1:활동, 2:비활동, 3:폐업)	○	-	○	-
63	56	BR_GI_SUMAMT	BR_GI_SUMAMT	BR기업_매출액(분기, 월간은 전년도 기업 매출액)	○	○	○	○
64	57	BR_GI_EMP_MF_T	BR_GI_EMP_MF_T	BR기업_종사자(합계)	○	○	○	○
65	58	BR_GI_EMP_T	BR_GI_EMP_T	BR기업_상용근로자(합계)	○	○	○	○
66	59	BR_GI_EMP_M	BR_GI_EMP_M	BR기업_상용근로자(남)	○	○	○	○
67	60	BR_GI_EMP_F	BR_GI_EMP_F	BR기업_상용근로자(여)	○	○	○	○
68	61	BR_GI_IMSI_T	BR_GI_IMSI_T	BR기업_임시및일용근로자(합계)	○	○	○	○
69	62	BR_GI_IMSI_M	BR_GI_IMSI_M	BR기업_임시및일용근로자(남)	○	○	○	○
70	63	BR_GI_IMSI_F	BR_GI_IMSI_F	BR기업_임시및일용근로자(여)	○	○	○	○
71	64	BR_GI_LCLS_CD	BR_GI_LCLS_CD	BR기업_산업분류코드(대)	○	○	○	○
72	-	BR_GI_LCLS_CD_SUMAMT	-	BR기업_산업분류코드(대)_매출액	○	-	○	-
73	65	BR_GI_MCLS_CD	BR_GI_MCLS_CD	BR기업_산업분류코드(중)	○	○	○	○
74	-	BR_GI_MCLS_CD_SUMAMT	-	BR기업_산업분류코드(중)_매출액	○	-	○	-
75	66	BR_GI_SCLS_CD	BR_GI_SCLS_CD	BR기업_산업분류코드(소)	○	○	○	○
76	-	BR_GI_SCLS_CD_SUMAMT	-	BR기업_산업분류코드(소)_매출액	○	-	○	-
77	-	GIUP_SIZE_CD	-	기업규모 (1:상출기업, 2:기타대기업, 3:중견기업, 4:중기업, 5:소기업, 6:소상공인, 91:기업규모 판정 제외 사업자)	○	-	○	-
78	-	ESALE_AMT_AVG	-	BR기업_3개년 평균 매출액(기준연도 포함)	○	-	○	-

순번	연간 분기/월간	연간	분기/월간	항목설명	명부추출		센터 분석	
					연간 (83개)	분기 (62개) /월간 (54개)	연간 (100개)	분기 (49개) /월간 (41개)
79	-	ETPR_GROP_NM	-	기업집단명	X	-	O	-
80	-	ETPR_GROP_FNC_YN	-	기업집단_금융여부(Y:금융, N:비금융)	X	-	O	-
81	67	SELL_AGC_CNT	SELL_AGC_CNT	온라인 판매대행 의뢰 건수	X	X	O	O
82	68	SELL_AGC_AMTB	SELL_AGC_AMTB	온라인 판매대행 의뢰 금액	X	X	O	O
83	69	STTL_REQ_CNT	STTL_REQ_CNT	온라인 결제대행 의뢰 건수	X	X	O	O
84	70	STTL_REQ_AMTB	STTL_REQ_AMTB	온라인 결제대행 의뢰 금액	X	X	O	O
85	-	ERG_COAL	-	에너지사용량(toe)_석탄류	X	-	O	-
86	-	ERG_OIL	-	에너지사용량(toe)_석유류	X	-	O	-
87	-	ERG_GAS	-	에너지사용량(toe)_가스	X	-	O	-
88	-	ERG_ETC_FUEL	-	에너지사용량(toe)_기타연료	X	-	O	-
89	-	ERG_HEAT	-	에너지사용량(toe)_열에너지	X	-	O	-
90	-	ERG_ELCT	-	에너지사용량(toe)_전력	X	-	O	-
91	-	GHUS_GAS_COAL	-	온실가스배출량(tCO2eq.)_석탄류	X	-	O	-
92	-	GHUS_GAS_OIL	-	온실가스배출량(tCO2eq.)_석유류	X	-	O	-
93	-	GHUS_GAS_GAS	-	온실가스배출량(tCO2eq.)_가스	X	-	O	-
94	-	GHUS_GAS_ETC_FUEL	-	온실가스배출량(tCO2eq.)_기타연료	X	-	O	-
95	-	GHUS_GAS_HEAT	-	온실가스배출량(tCO2eq.)_열에너지	X	-	O	-
96	-	GHUS_GAS_ELCT	-	온실가스배출량(tCO2eq.)_전력	X	-	O	-
-	71	-	COGE_AREA_TYPE_CD_1	밀집지역유형코드 (11:산업단지_국가산업단지, 12: 산업단지_농공단지, 13: 산업단지_도시첨단산업단지, 14:산업단지_일반산업단지, 20: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30: 벤처기업집적시설, 40: 신기술창업집적지역, 50: 지식산업센터, 60: 지역특화발전특구)	-	O	-	O
-	72	-	COGE_AREA_TYPE_CD_2	-	-	O	-	O
-	73	-	COGE_AREA_NM_1	밀집지역명	-	O	-	O
-	74	-	COGE_AREA_NM_2	-	-	O	-	O
97	-	NR_ERG_C_YN	-	(신재생에너지)_제조업_영위여부	X	-	O	-
98	-	NR_ERG_C_EMP_T	-	(신재생에너지)_제조업_종사자수	X	-	O	-
99	-	NR_ERG_C_SALE_AMT	-	(신재생에너지)_제조업_매출액	X	-	O	-

순번	연간 분기/월간	연간	분기/월간	항목설명	명부추출		센터 분석	
					연간 (83개)	분기 (62개) /월간 (54개)	연간 (100개)	분기 (49개) /월간 (41개)
100	-	NR_ERG_C_INVST_AMT	-	(신재생에너지)_제조업_투자액	X	-	O	-
101	-	NR_ERG_F_YN	-	(신재생에너지)_건설업_영위여부	X	-	O	-
102	-	NR_ERG_F_EMP_T	-	(신재생에너지)_건설업_종사자수	X	-	O	-
103	-	NR_ERG_F_SALE_AMT	-	(신재생에너지)_건설업_매출액	X	-	O	-
104	-	NR_ERG_F_INVST_AMT	-	(신재생에너지)_건설업_투자액	X	-	O	-
105	-	NR_ERG_D_YN	-	(신재생에너지)_공급업_영위여부	X	-	O	-
106	-	NR_ERG_D_EMP_T	-	(신재생에너지)_공급업_종사자수	X	-	O	-
107	-	NR_ERG_D_SALE_AMT	-	(신재생에너지)_공급업_매출액	X	-	O	-
108	-	NR_ERG_D_INVST_AMT	-	(신재생에너지)_공급업_투자액	X	-	O	-
109	-	NR_ERG_M_YN	-	(신재생에너지)_서비스업_영위여부	X	-	O	-
110	-	NR_ERG_M_EMP_T	-	(신재생에너지)_서비스업_종사자수	X	-	O	-
111	-	NR_ERG_M_SALE_AMT	-	(신재생에너지)_서비스업_매출액	X	-	O	-
112	-	NR_ERG_M_INVST_AMT	-	(신재생에너지)_서비스업_투자액	X	-	O	-
113	-	X_PST	-	(GIS)_X좌표	O	-	O	-
114	-	Y_PST	-	(GIS)_Y좌표	O	-	O	-
115	-	GRID_1K	-	(GIS)_격자(1km)	O	-	O	-
116	-	TRAD_AREA_NM	-	상권명	O	-	O	-
117	-	TRAD_AREA_SIP	-	상권면적(m ²)	O	-	O	-
118	-	MARKET_NM	-	전통시장명	O	-	O	-
119	-	MARKET_SIP	-	전통시장면적(m ²)	O	-	O	-
120	75	BIGO	BIGO	비고	O	O	O	O

■ : 해당 자료는 분기단위 입수로 연간 및 분기 SBR에만 제공되고, 월간 SBR에는 제공되지 않음

2 기업통계등록부 구축시 활용자료

기관	행정자료명	구분		구축항목		
		연간	분기/월간			
국세청	사업자등록자료	○	○	사업체, 기업 기본사항		
	법인세 자료	○	○			
	부가가치세 자료	○	○			
	사업소득신고(복식기장, 간편장부)	○	○	기업 매출액		
	온라인 판매대행 및 결제대행 자료	○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기업 종사자		
	사업소득지급명세서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			
	일용근로내역확인서	○	○			
건강보험자료_사업장 및 가입자	○	○				
4대보험	국민연금자료_사업장 및 가입자	○	○			
	고용·산재보험자료_피보험자 및 상실자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이직 자료	○				
	전국사업체조사(또는 경제총조사)	○		조사-행정 연계 매출액 및 종사자 배분 경제통계조사 응답현황표		
기업활동조사	○					
광업제조업조사	○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		경제통계조사 응답현황표		
	건설업조사	○				
	운수업조사	○				
	프랜차이즈조사	○				
	광공업동향조사	○				
	서비스업동향조사	○				
	온라인쇼핑동향조사	○				
	기업통계등록부 정비 결과	○	○		산업분류, 주소 등 보완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배출 실태조사	○			에너지 분야 항목
		신재생에너지산업 실태조사	○			특수산업분류, 종사자수, 매출액, 투자액 등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밀집지역		○	밀집지역 유형 및 명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및 상권 정보	○		전통시장 및 상권 명칭, 면적		
통계청 공간정보서비스과	기업 및 사업체의 공간정보	○		좌표정보, 격자정보		

3

기업통계등록부 관련 규정

● (통계법 제3조(정의))

4. “ 통계자료”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 행정자료”란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말한다.

● (국가통계 자료제공 규정 제2조(정의))

2. “ 공표외 자료”란 공표자료 이외의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

가. 개인, 가구, 사업체,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수집·취득 또는 사용된 정보로서 입력오류, 조사 오류 등을 제거하여 통계 작성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통계기초자료(Microdata)

나. 대규모 전수조사 실시를 위하여 사전적으로 작성되는 가구 또는 사업체를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가 수록된 명부자료

다. 통계기초자료를 집계하여 만든 통계자료 중에서 대외에 공표되지 아니한 미공표 집계자료

3. “ 행정통계자료”란 행정자료를 주 원천자료로 하여 암호화 과정, 정제, 연계 등 통계적 처리를 거쳐 생산한 자료를 말한다.

●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1. “ 행정통계자료”란 행정자료를 주 원천자료로 하여 암호화 과정, 정제, 연계 등 통계적 처리를 거쳐 생산한 자료를 말한다.

2. “ 통계기초자료(Microdata)”란 개인, 가구, 사업체,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수집·취득 또는 사용된 정보로서 오류 등을 제거하여 통계 작성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자료를 말한다.

●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제2조(정의))

10. “ 통계용 행정DB”란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자료의 오류 수정, 산업분류 및 행정 구역 코드 부여 등 통계적 처리를 거친 행정자료 DB를 말한다.

● (통계법 제30조(통계자료의 제공))

-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통계작성기관에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른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때에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의 표본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때에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식별되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1.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
 -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후 그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예비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 ③ 제2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는 이를 제공받은 목적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통계자료의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통계법 제31조(통계자료의 이용))

- ①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통계자료의 사용목적·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 1. 통계응답자가 자신이 응답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2. 총조사 및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작성하는 통계 중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사업체 명, 업종,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국가통계 자료제공 규정 제5조(자료 제공방법))

② 공표외 자료는「통계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및 제4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통계기초자료는 자료제공시스템을 통해 제공한다. 다만, 정책적 긴급성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2. 미공표 집계자료는 전자우편, 문서, 전산매체 및 자료제공시스템을 통해 제공한다.
3. 명부자료, 전산지도자료, 공간좌표자료는 승인을 득한 자료에 한하여 자료제공시스템 등을 통해 제공한다.

● (국가통계 자료제공 규정 제9조(자료 제공주체))

② 공표외 자료는 통계작성기관 각 부서의 장 또는 통계책임관이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계법」제37조제3항에 따라 통계청이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통계청내의 소관부서가 통합하여 제공한다.

●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통계등록부 등 행정통계자료 제공
2. 민간자료(통계법상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단체 및 법인에서 작성·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공
3. 인가된 통계기초자료(Microdata) 제공
4.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반입 자료와 위 1호부터 3호까지의 자료와의 연계 지원
5. 이용자 반입 자료의 분석 지원 및 이용자 반입 자료 간 연계 지원
6. 센터 이용과 관련한 상담 및 자료 분석 지원, 주문형서비스의 제공
7. 통계데이터 분석 교육 및 데이터 활용 관련 연구
8. 서비스 자료의 품질관리 및 센터 내 자료의 비식별화 관리
9. 그 밖에 홍보 등 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활동

-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분석결과의 반출))
 - ② 분석 결과는 집계표 형태로 반출하여야 하며, 식별정보가 포함되거나 재식별이 가능한 형태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반출이 불가능하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영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집계표 외의 형태로 반출할 수 있다.
 1. 통계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의 표본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후 그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예비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의 표본
 3. 총조사 및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작성하는 통계 중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사업체 또는 기업체 상호, 주소, 전화번호, 산업분류 정보
 4. 통계자료제공심의회에서 승인된 사항
 - ③ 제1항에 따라 분석결과 등의 반출 신청이 있을 시 반출에 대한 승인여부는 자료반출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며, 그 결과를 2주 이내에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반출 승인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승인된 자료는 신청 시 작성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으며, 자료를 인용하거나 공표하는 등 대외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통계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제12조(자료이용))
 - ① 행정자료 DB 및 개별파일 형태로 보관중인 개체식별자료는「통계법시행령」제3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용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목적으로 이용 시에는 자료제공기관의 장에게 그 목적에 따른 자료제공결정을 득한 후 이용할 수 있다.
 - ②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은 통계적 처리를 거친 통계용 행정DB 등에 구축된 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 ④ 통계청 이외 기관 및 개인은 통계자료제공심의회 심의를 거친 통계자료를 통계데이터센터 내에서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할 수 있다.
 - ⑤ 통계 작성 및 공동 연구 등을 위해 통계청 외부로 통계자료를 반출하려는 자는 별표1의 자료반출 이용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1> 중소기업의 범위와 중소기업자의 범위

※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 등”이라 한다)이 별표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 일 것

※ 중소기업자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참고2> 소상공인의 범위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범위)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참고3> 중소기업 분류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8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

업종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제조업	1,500억원 이하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10명 미만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20억원 이하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80억원 이하		
		1차 금속 제조업	120억원 이하		
		전기장비 제조업	120억원 이하		
		가구 제조업	120억원 이하		
		식료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담배 제조업	80억원 이하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80억원 이하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8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	120억원 이하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80억원 이하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120억원 이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20억원 이하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20억원 이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20억원 이하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80억원 이하		
		음료 제조업	120억원 이하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80억원 이하		
	800억원 이하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80억원 이하		
		기타 제품 제조업	8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20억원 이하		5명 미만
		수도업	120억원 이하		5명 미만
1,000억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80억원 이하	5명 미만		
	광업	80억원 이하	10명 미만		
	건설업	80억원 이하	10명 미만		
	도매 및 소매업	50억원 이하	5명 미만		
	운수 및 창고업	80억원 이하	10명 미만		
800억원 이하	정보통신업	50억원 이하	5명 미만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제외)	30억원 이하			
600억원 이하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임대업제외)	3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0억원 이하			
	산업용기계 및 장비수리업	10억원 이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0억원 이하			
400억원 이하	금융·보험업	80억원 이하			
	부동산업	30억원 이하			
	임대업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 자동차용 신문의자 제조업(C30393)은 별도기준(중소기업 :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소기업 : 120억원 이하)

4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

대분류	중분류	
A	농업, 임업 및 어업	
01~03	01	농업
	02	임업
	03	어업
B	광업	
05~08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6	금속 광업
	07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C	제조업	
10~34	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12	담배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8	임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제정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대분류	중분류	
10~34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36~39	36	수도업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F	건설업	
41~42	41	종합 건설업
	42	전문직별 공사업
G	도매 및 소매업	
45~47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H	운수 및 창고업	
49~52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50	수상 운송업
	51	항공 운송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55	숙박업
	56	음식점 및 주점업
J	정보통신업	

대분류	중분류	
58~63	58	출판업
	59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0	방송업
	61	우편 및 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	
64~66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L	부동산업	
68	68	부동산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73	70	연구개발업
	71	전문 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4~76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76	임대업; 부동산 제외
O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84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	교육 서비스업	
85	85	교육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87	86	보건업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대분류	중분류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91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96	94	협회 및 단체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97~98	97	가구 내 고용활동
	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	
99	99	국제 및 외국기관

5

행정구역분류코드

지역	행정코드	법정코드	국번
서울	11	11	02
부산	21	26	051
대구	22	27	053
인천	23	28	032
광주	24	29	062
대전	25	30	042
울산	26	31	052
세종	29	36	044
경기도	31	41	031
강원도	32	42	033
충청북도	33	43	043
충청남도	34	44	041
전라북도	35	45	063
전라남도	36	46	061
경상북도	37	47	054
경상남도	38	48	055
제주도	39	50	064



6

주요 용어해설

- 사 업 체 : 해당 기준연도(분기) 내에 1일 이상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사업체
- 기 업 : 법인등록번호 또는 본점 사업자등록번호 1개당 1개의 기업으로 정의
- 기 업 집 단 : 공정위에서 고시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 개 인 대 체 번 호 : 국세청 사업자등록자료에 등재된 대표자의 정보(성명, 성별, 생년월일)를 고유번호로 암호화한 번호
- BR사업체고유번호 : 사업체 단위의 고유키로, 시계열 및 분기와 연간 자료 간 분석 등을 위한 연계키
- BR기업고유번호 : 기업 단위의 고유키로, 시계열 및 자료 간 분석 등을 위한 연계키
* BR기업고유번호가 동일한 사업체는 동일 기업 소속
- 개 인 사 업 체 : 개인이 소유·경영하는 사업체를 말하며, 법인격을 갖추지 않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체 포함
- 회 사 법 인 : 상법 상의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 회 사 이 외 법 인 :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법인이 아닌 법인
- 비 법 인 단 체 : 법인이 아닌 단체를 말하며 동창회, 후원회, 문화단체, 노동단체, 종친회, 법인이 아닌 교회 및 암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 조직구성원의 신분이 공무원인 기관
- 중 앙 정 부 기 관 : 부·처·청 등 중앙정부와 중앙정부의 지배를 받는 공공비영리단체로 구성
- 지 방 정 부 기 관 :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의 지배를 받는 공공비영리단체로 구성
- 사 회 보 장 기 금 : 정부기관이 통제할 수 있는 사회보험 제도(국민건강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 종 사 자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및 국세청에 근로·사업·일용 소득을 신고하는 근로자
- 상 용 종 사 자 :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 임시 및 일용종사자 :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임금근로자 또는 일용 근로자로 신고한 자
- 상 출 기 업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기업집단 중에서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공공기관 제외)에 속하는 대기업

- 기 타 대 기 업 : 중소기업 규모는 초과하지만 상출기업과 중견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으로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및 일부 공공기관, 순수 금융·보험업, 자산 10조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의 피출자기업 등으로 구성
- 중 견 기 업 :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규모 기준을 초과하거나 자산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
- 중 기 업 :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가 중소기업이면서, 소기업 규모를 초과하는 기업 및 중소기업 유예 및 경과조치 기관 중인 기업
- 소 기 업 :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가 중소기업이면서, 소기업 규모 이하인 기업
- 소 상 공 인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이면서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산 업 분 류 : 사업체·기업이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코드
* 사업체 산업분류: 5자리(세세분류), 기업 산업분류: 3자리(소분류) 작성·제공
- 활 동 : 사업체·기업의 매출액 또는 종사자가 존재하는 경우를 활동으로 분류
- 비 활 동 : 사업체·기업의 매출액과 종사자가 모두 '0'이거나 없는 경우를 비활동으로 분류
- 등 록 일 자 :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 개 업 일 자 : 대표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기입한 개업일
- 폐 업 일 자 : 대표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기입한 폐업일



기업통계등록부 이용자 안내서



통계청
Statistics Korea